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소수 영화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 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7년 07월 30일

청 원 인

성 명 : 유근탁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(인) 외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
	성명 : 유근탁
건명	소수 영화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
소개년월일	2017년 7월 30 일
<p>소개의견</p> <p>청원인 유근탁 외 10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회 정기회의 통합위원회 의원입니다.</p> <p>제15회 정기회의 & 청소년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>입니다.</p> <p>CJ CGV,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 기업들이 영화 투자, 제작, 배급, 상영까지 총괄하는 수익구조와 해당 구조를 악용한 상영관(스크린) 독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습니다. 한국 영화로서는 ‘군함도’(전체 복합상영관 2575개 상영관 중 2027개 상영관에서 상영됨)와 ‘검사의전’(2575개 상영관 중 1812 상영관에서 상영됨)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복합상영관 기업들의 영화상영관 독점이 많아질수록 관객들의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고 영화문화는 점점 획일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따라서 한 복합상영관 내에서 한 영화 당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.</p> <p>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</p> <p>제41조(영화상영의 신고)</p> <p>④ <u>5개 초과</u>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의 경영자는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<u>추가적으로 해당 복합상영관의 각 영화마다</u> 배정된 영화상영관 수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한 영화에 4개 초과 <u>의</u> 영화상영관이 신고될 수 없다.</p>	

소 개 의 원

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CJ 엔터테인먼트, 롯데 엔터테인먼트, NEW와 같은 대형 배급사들과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 등 영화상업업자들의 상호계약으로 해외/국내 영화를 막론하고 한 영화가 상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
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첫째, 극장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영화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의 권리가 침해됩니다.

둘째, 영화계의 발전은 다양한 영화들이 함께 경쟁할 때 의미를 가지는데, 영화상영권 독점으로 예술 영화들이나 독립영화들 같은 경우 경쟁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여 영화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여지가 있습니다.

셋째로, 한 영화의 영화상영권 독점으로 다양성 영화들이 잘 상영되지 못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, 대형 영화상영권인 CGV는 <나의 소녀시대>, <서프러제트> 등의 예술 장르 영화를 지속적으로 단독 개봉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 영화의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관객들의 독립/예술 영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

최근 들어 <검사외전>, <군함도> 등 대형 배급사가 공급하는 특정 영화들만 극장의 스크린을 독점하는 현상이 특히 많아지고 있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산업에서 '수익성'이라는 시장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투자사, 제작사, 배급사, 상영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투자/제작한 영화의 수익을 확보하고자 영화상영권 대부분을 대여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전체 2575개 영화상영권 중 영화 <군함도>는 2027개 영화상영권에서 상영되고 있으며, 검사외전은 1812개 영화상영권에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.

정부, 가계, 기업은 자본주의의 대표적 주체입니다. 그러나 영화업계에서는 기업의 영향력이 가계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의 배급 없이 일반 시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영화업계에서 소비자의 소비에 영향력을 키워주려면 정부의 개입, 즉 영화 및 비디오법 제41조제4항의 신설이 불가피합니다.

2. 주요골자

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제41조(영화상영의 신고)

-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(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,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5개 초과 의 영화상영관을 소지한 복합상영관의 경영자는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복합상영관의 각 영화마다 배정된 영화상영관 수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한 영화에 4개 초과 의 영화상영관이 신고될 수 없다.

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41조(영화상영의 신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(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,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	<p>제41조(영화상영의 신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(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,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④ 5개 초과 <u>의</u>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의 경영자는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복합상영관의 각 영화마다 배정된 영화상영관 수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한 영화에 4개

초과의 영화상영권이 신고될 수 없다.

3. 기대효과

위 개정안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투자-제작-배급-상영의 4중 수익구조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나아가 기업에 의한 상영권 독점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독립/예술 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을 더욱 많이 상영하게 되어 영화 다양성이 장려될 것입니다. 장기적으로 위 개정안을 통해 영화 산업이 소수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배급하는 영화 위주가 아닌, 관객들의 수요가 높은 영화 위주로 발전할 것입니다.

문화의 진흥은 다양성의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. 위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한국 영화계가 문화적 진흥이라는 가치를 달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청원인 성명 :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